

학생 생활 규정

제정 1997. 3. 10.

(중간 생략)

개정 2017. 2. 20.

개정 2018. 3. 1.

개정 2018. 11. 1.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제2조 【생활 교육 원칙】

- ①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학생의 권리

제3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와 제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 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8조 【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9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2조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13조 【자치활동의 권리】

- 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5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17조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8조 【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담임·상담·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19조 【수업 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0조 【복장】

- ① 등하교와 학교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별표 1)으로 생활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교복(동복·춘추복·하복) 착용 시기는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회에서 결정한다.
- ③ 교복(와이셔츠와 넥타이, 바지 등)은 반드시 지정된 디자인과 색상으로 하며, 교복의 형태를 변형해서는 안 된다.
- ④ 하복 중 남색 반바지는 교외행사(학교대표 등) 참여 및 각종 면접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 ⑤ 교내에서는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의 반팔 티에 한한다.
- ⑥ 실습 시 수업에 맞는 실습복(별표 1)을 갖춰 입고 필요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⑦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⑧ 학생의 명찰은 탈부착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교외에서의 명찰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 명찰은 왼쪽 가슴 부분에 탈부착용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 직사각형꼴의 형태로 녹색, 빨간(자주), 노란색 순으로 학년별로 돌려가며 색상을 구분한다.
- ⑨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⑩ 안전을 위해 슬리퍼는 교실에서만 착용하고 실외, 실습, 체육활동 등에서는 착용하지 않는다.

제21조 【용모 및 액세서리】

- ①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③ 학생의 두발은 자율화 하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고, 타인에게 불쾌감(위화감)을 주지 않는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 * 안전과 건강을 해치고 타인에게 불쾌감(위화감)을 주는 머리 형태라 함은 염색, 언밸런스 머리, 닭 벼슬 머리, 사자 갈기 머리, 머리가 지나치게 긴 경우, 왁스를

지나치게 많이 발라 머리 형태를 이상하게 한 경우, 특수머리 등의 형태를 말한다.

- ④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액세서리(피어싱, 유색렌즈 등)는 금한다. (단, 액세서리 중 귓볼에 붙는 작은 귀걸이, 얇은(실) 반지 1개 허용)

제22조 【이성 교제】

- ① 서로 존중하고 성 평등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교내에서 이성간 신체적 접촉과 표현(손잡기, 팔짱끼기, 어깨동무 등)을 금한다.
-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 【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은 실담당 교사 허락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24조 【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5조 【개인 소유물】

-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6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차량이나 오토바이
-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27조 【소지품 검사】

- ① (일괄소지품 검사의 금지)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소지품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급 담임교사와 인성안전부의 협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특정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 학교 시설물 보호,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학칙 위반 사항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제26조와 제27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29조 【전자기기 사용】

-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 행사(단, 체육대회, 청룡제 제외), 체험활동, 방과후 수업 등 모든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 및 유·무선이어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교사의 허락 없이 전자기기를 꺼내놓거나, 전자기기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래 표에 따라 조치한다.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1주 보관	2주 보관 (인성안전부 상담)	3주 보관 (내방상담)	4주 보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교내봉사 이상 징계] (Wee클래스 상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출석정지 이상 징계]

-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4회 이상일 때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학생이 전

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 교사의 교육적 지도 불응 사항을 추가하여 징계를 요청한다.

- ⑥ 3회 위반까지는 당해연도의 징계로 처리하지만, 4회 이상은 졸업할 때까지 누적하여 가중처벌한다.
(전학년도에 4회 이상 위반 후 다음 학년도에 1회 이상 위반 시에는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에 회부하여 누적 가중처벌한다.)
- ⑦ 4회 이상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Wee클래스 상담과 취업부의 도움을 받아 지도한다.
- ⑧ 고사(시험) 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⑨ 스마트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해 불법 또는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 및 촬영을 한 경우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즉시 회부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하며, 그 결과물을 소지 및 유포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퇴학(전학 권고) 처리한다.

제30조 【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1조 【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2조 【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3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35조 【기능】

- 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징계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1.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모든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학교 내의 봉사」 이하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6조 【구성 및 심의】

-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 규정위원회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지도담당교감, 인성안전부장, 학년교육부장, 인성안전부

생활지도교사, 인성안전부 사안담당교사 및 상담교사로 구성되며, 생활지도담당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인성안전부장은 부위원장이 되어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③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인성안전부장, 학년교육부장, 인성안전부 생활지도교사, 사안담당교사로 구성되며, 인성안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안담당교사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2/3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사안설명】

- 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담당교사,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하여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②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제38조 【학교장 재심 부의】

-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의 재심 요청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 ③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을 심의·의결한다.

제39조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 부의】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별첨서식1-6>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 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0조 【기록 및 사무 처리】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해당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사안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41조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연간 30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제42조 【징계 종류 및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인성안전부 환경담당계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하루 2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단, 교육적인 판단이나 기타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이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또는 개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단 필요할 경우 학생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학부모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퇴학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⑥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41조 각 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⑧ 「퇴학처분」 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생 생활교육 대장에 °학교*(기관)로 편입,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 ⑨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⑩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⑪ 징계에 의한 봉사는 일반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43조 【징계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44조 【징계 심의 확정】

- ①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사안담당교사의 사안 경위서와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의견서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학생생활교육규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 내용의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6조 【징계 기간의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단, 고사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7조 【징계 경감 및 연장】

-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기간 중 활동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 【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생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인성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징계 사후 지도】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별적으로 타 학교에 재입학이나 편입학 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50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52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3조 【심의와 개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 결재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54조 【연수와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선도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복 및 실습복

동복	춘추복	
(상의 : 흰색 와이셔츠, V-neck형조끼, 넥타이, 캐시미어 자켓, 하의 : 남색 바지)	(상의 : 흰색 와이셔츠, V-neck형조끼, 넥타이, or 흰색 와이셔츠, 넥타이, 하의 : 남색 바지)	
		
남학생 하복		
(상의: 하늘색(남) or 갈색 반팔 남방) (하의: 남색 바지 or 남색 반바지)		
		 

여학생 하복

상의: 흰색 블라우스(여) or 갈색 반팔 남방, 하의: 남색 바지 or 남색 반바지



실습복

(실습 시 수업에 맞는 실습복 착용) 노랑-폴리과, 빨강-금형과, 연두-로봇과, 주황-메카과

상의 : 남색 작업복 자켓 or 반팔 티셔츠, 하의 : 남색 작업복 바지



(별표 2) 징계 기준(학생생활규정 제43조)

구분	항	징 계 대 상	징 계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자주한 학생	○				
	2	용의가 바르지 못하여 지도를 자주 받아 온 학생	○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동 및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
준법	5	고의적으로 기물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	○	○			
	6	오토바이 운전, 승합 등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7	공공문서나 인장 등을 변조 또는 위조하여 사용한 학생	○	○	○	○	○
	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9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학생	○	○	○	○	
	10	사범기관에 구속되었거나 형사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11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되었으나 범법행위가 인정된 학생		○	○	○	○
	1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3	고의적인 방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14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5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				
16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학교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수업 및 고사	17	휴대폰 사용 4회 이상 위반한 학생	○	○	○	○	○
	18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하고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9	고사 중 부정행위와 이에 동조했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0	집단으로 시험 거부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21	학교 통신망을 도용하거나 시험문제를 절취, 누설한 학생		○	○	○	○
근태	22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가 10회에 달한 학생	○	○	○		
	23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4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	
	25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	○	○		
흡연 및 약물	26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한 학생 및 그 행위에 도움을 준 학생			○	○	○
	27	음주를 한 학생	○	○			
	28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29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흡입 및 복용한 학생			○	○	○
퇴폐 행위	30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31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2	불량서적·음란물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33	불량서적이거나 음란물 등의 제작, 대여, 매매에 참여한 학생		○	○	○	○
	34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	○	○	
	35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금품	36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칙을 문란케 한 학생	○	○	○	○	
집단	37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38	학교의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39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40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4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도록 학생들을 선동한 학생			○	○	○
	42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사이버	43	불량한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학생	○	○	○	○	○
	44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도용한 학생	○	○	○	○	○
	45	불법으로 해킹 또는 크래킹을 한 학생	○	○	○	○	

※ 【흡연 징계】

1. 매회 적발 시 학부모 학교 방문 상담 후 학생·학부모 금연각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흡연1회 적발까지의 징계는 별도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없이 시행하되 출석정지(흡연2회 적발) 이상의 징계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가. 흡연1회 적발 시- 특별교육이수 3일(금연교실 3일)

- ① 금연교실 3일(금연학교, 전문상담 및 인성부상담, 교내봉사 등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실시)
- ② 금연학교 수료후 수료증 제출 및 겨울방학 전까지 주기적으로 흡연 여부 검사 실시

나. 흡연2회 적발 시 - 출석정지 3일

- ① 무단결석 3일로 처리되며 가정학습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다.
- ② 금연실천 프로그램과 관련 과제 제출 및 겨울방학 전까지 주기적으로 흡연 여부 검사 실시

다. 흡연3회 적발 시 - 전학권고(이행 불가 시 대안학교 1개월 실시)

라. 흡연4회 적발 시 - 전학권고(이행 불가 시 대안학교 3개월 실시)

마. 흡연5회 적발 시 - 퇴학

2. 동일 학년에서 3회 이상의 흡연 징계를 받을 때에는 졸업할 때까지 누적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동일 학년 흡연 2회 적발까지는 누적하여 처벌하지 않음.)

3. <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징계 대상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